

『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8월 29일

나. 발 의 자 : 김재우, 김택호, 신문식, 이지연, 최경동(5인)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9월 4일

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재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임대허가 제한 범위를 완화하여 모자가족인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(안 제5조)
 - 현행 :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
 - 개정 :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
- 임대허가 제한 범위 완화(안 제7조)
 - 모자가족의 경우 자녀 동반 입주 가능

- 상위 법령에 따른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9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 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- 본 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공단지역 여성근로자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건립된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모자가족인 경우 자녀 동반 입주가 가능하도록 임대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율 증가 및 모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며 운영시 입주율 제고를 위해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